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  
의무에 관한 현황 조사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팀장 김 준

입법조사관보 이 동 영

Tel. 788-4736/Fax. 788-4739  
E-mail: envilee@assembly.go.kr



# 요 약

## 질의 요지

(환경부, 고용노동부) 정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 현황 및 근거법률 조항 조사, 중장기 계획수립 실효성·필요성, 기존 연구, 해외 주요국 중장기 계획수립 동향, 중장기 계획 수립 실효성 제고 방안 등

(회답일시 2016. 11. 16.)

## ■ 조사·분석 방향

-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법정 중장기 계획 목록 조사
- 중장기 계획수립의 실효성, 필요성, 기존연구 조사
- 해외 주요국의 중장기 계획수립 동향 조사

## ■ 주 요 내 용

- 환경부, 고용노동부 법정 중장기 계획 목록
  - 환경부는 총 58개 소관(공동 소관 포함) 법률 가운데 37개 법률에서 총 60개의 중장기 종합계획 혹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총 41개 소관(공동 소관 포함) 법률 가운데 15개 법률에서 총 15개의 중장기 종합계획 혹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실효성, 비효율성 등을 언급한 기존 연구는 검색되지 않음
- 해외 주요국의 중장기 계획수립 동향
  - 일본: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관련법이 일본의 환경 분야 관련법을 많이 참고한 만큼 일본도 환경 각 분야별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활발하고, 노동 분야 관련법에서도 일본은 고용대책 등에 대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미국: 공공부문 중에서도 행정부문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정부성과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 내 모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전략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미국 환경청(EPA)은 GPRA 규정에 따라 1995년부터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1997년부터 2006년 동안 총 3차에 걸친 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함

# 목 차

1. 질의 요지 및 회신 방향 .....	1
2. 환경부, 고용노동부 법정 중장기 계획 목록 .....	2
3. 중장기 계획수립의 실효성, 필요성 등 기존 연구 결과 .....	6
4. 해외 주요국의 중장기 계획수립 동향 .....	7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 요지 및 회신 방향

## □ 질의 요지

- 각종 법률에서는 해당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관계분야의 장관 또는 지자체 장 등이 3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단기 계획 및 계획점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행정의 중장기 계획수립이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종합적인 현황 파악 및 대안마련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조사를 요청함
  - 1. 중장기 계획 수립의 의무가 부가된 정부행정 현황 및 각 건별 근거법률조항
  - 2. 정부행정의 중장기 계획수립의 실효성 또는 필요성 논의와 관련한 기존 연구 및 주요 내용
  - 3. 해외 주요국의 중장기 계획수립 동향
  - 4. 정부의 중장기계획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위 내용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으로 질의 분리되었음

## □ 회신 방향

-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법정 중장기 계획 목록 조사
- 중장기 계획수립의 실효성, 필요성, 기존연구 조사
- 해외 주요국의 중장기 계획수립 동향 조사
-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중장기 계획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부문은 해당 연구를 찾을 수 없어 언급하지 않음

## 2. 환경부, 고용노동부 법정 중장기 계획 목록

### □ 환경부

- 환경부는 총 58개 소관(공동 소관 포함) 법률 가운데 37개 법률에서 총 60개의 중장기 종합계획 혹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년 혹은 10년 이상의 주기로 규정되어 있는 중장기 종합(기본)계획은 47개임
  - 주기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성격상 중장기 종합(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은 13개임
- 구체적인 계획명 및 소관 법령은 다음과 같음(법령명 가나다 순)

[표 1] 환경부 소관 중장기 종합계획 목록

번호	법령명	중장기 종합계획명	주체	주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10년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재활용기본계획	환경부장관	5년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	5년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도지사	승인 사항
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	5년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도지사	승인 사항
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정부	5년
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환경부장관	5년
9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환경부장관	10년
1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10년
1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5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국민신탁법인	10년

번호	법령명	중장기 종합계획명	주체	주기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10년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10년
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정부	5년
1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외래생물관리계획	환경부장관	5년
16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	석면관리 기본계획	정부	5년
17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3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환경부장관	5년
1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10년
1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 계획	환경부장관	5년
20	「수도법」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10년
21	「수도법」 제5조	전국수도종합계획	환경부장관	10년
22	「수도법」 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종합계획	시·도지사	5년
23	「수도법」 제8조의2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5년
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한 법률」 제4조의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도지사	승인 사항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한 법률」 제24조	대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10년
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한 법률」 제27조의2	수생태계 복원계획 [시행일 2017.1.28]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27	「습지보전법」 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5년
28	「습지보전법」 제11조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 계획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

번호	법령명	중장기 종합계획명	주체	주기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5년
30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4	라돈관리계획 [시행일 2016.12.23]	환경부장관	5년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5년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장기 보전대책	환경부장관	-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5년
3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	5년
3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도지사	승인 사항
36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4조	빛공해방지계획	환경부장관	5년
37	「자연공원법」 제11조	공원기본계획	환경부장관	10년
38	「자연공원법」 제12조	국립공원계획	환경부장관	-
39	「자연공원법」 제13조	도립공원계획	시·도지사	-
40	「자연공원법」 제14조	군립공원계획	군수	-
41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부장관	10년
42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 계획	환경부장관	-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자원순환기본계획	환경부장관	5년
4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계획	환경부장관	5년
45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	환경부장관	10년
46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	대책지역 토양오염대책 계획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47	「폐기물관리법」 제9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시·도지사	10년
48	「폐기물관리법」 제10조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환경부장관	10년
49	「하수도법」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	환경부장관	10년
50	「하수도법」 제4조의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유역환경청장, 지 방환경청장	20년
51	「하수도법」 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	20년

번호	법령명	중장기 종합계획명	주체	주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5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	5년
5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도지사	승인 사항
54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5년
55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	환경교육종합계획	환경부장관	5년
5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환경부장관	5년
57	「환경보건법」 제6조	환경보건종합계획	환경부장관	10년
5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5년
59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장관	20년
60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환경부장관	5년

주) 종합계획에 근거한 세부 시행계획과 1년 단위 계획 또는 3년 이하 주기 계획은 제외함

##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총 41개 소관(공동 소관 포함) 법률 가운데 15개 법률에서 총 15개의 중장기 종합계획 혹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년 혹은 10년 이상의 주기로 규정되어 있는 중장기 종합(기본)계획은 10개임
  - 주기는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성격상 중장기 종합(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은 5개임
- 구체적인 계획명 및 소관 법령은 다음과 같음(법령명 가나다 순)

[표 2] 고용노동부 소관 중장기 종합계획 목록

번호	법령명	중장기 종합계획명	주체	주기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	5년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5년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	5년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4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	고용정책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	5년
5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	5년
6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	5년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촉진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	5년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	5년
9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	5년
10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산업재해예방 중·장기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	-
11	「숙련기술장려법」 제5조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	5년
12	「자격기본법」 제7조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정부	-
1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국가	-
1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
1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3조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정부	-

주) 종합계획에 근거한 세부 시행계획과 1년 단위 계획 또는 3년 이하 주기 계획은 제외함

### 3. 중장기 계획수립의 실효성, 필요성 등 기존 연구 결과

-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실효성, 비효율성 등을 언급한 기존 연구는 검색되지 않음
-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중장기 종합(기본)계획에 대한 실효성 또는 비효율성을 언급한 기사 및 연구결과를 검색한 결과, 기존의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간·사업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부처 기본계획의 수립을 장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 4. 해외 주요국의 중장기 계획수립 동향

### □ 일본

-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관련법이 일본의 환경 분야 관련법을 많이 참고한 만큼 일본도 환경 각 분야별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활발함
  - 「환경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환경기본계획’(5년)
  - 「순환형사회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순환형사회기본계획’(5년)
  - 「수자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자원개발기본계획’
  - 「수도법」에 의한 광역적 ‘수도정비계획’, ‘전국종합수자원계획’
  - 「하수도법」에 의한 유역별 ‘하수도정비 종합계획’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계획’ 등
- 노동 분야 관련법에서도 일본은 고용대책 등에 대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고용대책법」에 의한 ‘고용대책기본계획’(5년)
  -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5년)

### □ 미국

- 미국은 공공부문 중에서도 행정부문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정부성과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 내 모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전략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였음<sup>1)</sup>
- 1993년 제정된 「정부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 GPRA)」 제3조, 제4조에 따른 전략계획 수립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연방정부 내 각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기관별 추진사업 및 활동을 담은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수립하여 의회, 관리예산실에 제출
  - 전략계획은 계획을 제출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되 3년마다 수정함
- 미국 환경청(EPA)은 GPRA 규정에 따라 1995년부터 본격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총 3차에 걸친 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함
  - 1997년 9월 제1차 환경전략계획(1997~2002)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 2003년 9월 제2차 환경전략계획(2003~2008)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 2006년 9월, 제2차 환경전략계획 수정계획(2006~2011) 수립, 의회 제출

1) 국토연구원, 「미국의 환경전략계획 수립 동향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제141호 2007.6.11. p.2.